

kiri Weekly

2013.3.18 제225호

이슈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포커스

담뱃세 증세 논란

금융보험 해설

퇴직연금의 이해 (5):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업무수행

글로벌 이슈

유로존 경기침체 지속

중국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강화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정원석 연구위원, 김유미 인턴연구원

요약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국민 스스로가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
 - 정부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¹⁾을 3대 축으로 한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고소득층은 노후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저 소득층은 부족한 상황임.
 - 고소득층은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할 여유가 있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음.
- 정부는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부터 수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저소득층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함.
 - 저축의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더 많은 액수에 대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감면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중·저 소득층은 더 적은 액수에 대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감면받게 됨.
-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정책적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 보통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저축, 세제비적격연금, 변액연금을 포괄하나 본고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을 지칭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 의료기술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임.
 -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됨.
 - 한편,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을 기록해 전 세계 222개국 중 최하위권인 217위를 기록함.
 - 2010년 현재 여성의 기대수명은 84.1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77.2세임을 감안 할 때 60세 이후 남성은 17년, 여성은 24년 이상을 노동소득이 아닌 수입원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함.²⁾

- 인구구조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그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고령의 피부양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연금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임.
 - 노후의 경제적 문제에 가장 기초적 대비인 국민연금은 저성장 시대 도래로 인한 낮은 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령자, 줄어드는 연금납부자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변화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주도의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³⁾이며 미래에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정부는 국민연금을 중심축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보장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함.

2) 통계청, 「2010년 생명표」.

3)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소득대체율을 줄여 나가고 있음.

■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 불안요소로서 48.6%가 건강에 대한 불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4.1%가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을 꼽았음.⁴⁾

- 하지만 노후생활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평가에서는 7%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5.8%는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⁵⁾
-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 1〉 소득수준별 노후준비실태

(단위: %)

소득수준	잘하고 있음	보통	잘 못하고 있음
저소득	4.4	37.9	57.7
중소득	6.7	50.6	42.7
고소득	9.7	49.4	40.9

자료: 황진태 외 5인(2012),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노후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중·저 소득층에게 특화된 정부의 세제지원이 없는 실정임.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나 소득세율 구조가 누진적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임.

〈표 2〉 개인연금 납입 금액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금감면액

과세표준	한계세율 ⁶⁾	월 10만 원 납입 (연 120만 원)	월 25만 원 납입 (연 300만 원)	월 34만 원 납입 (연 400만 원)
1,200만 원 이하	6.6%	79,200원	198,000원	264,000원
1,200만 원 ~ 4,600만 원	16.5%	198,000원	495,000원	660,000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6.4%	316,800원	792,000원	1,056,000원
8,800만 원 ~ 3억 원	38.5%	462,000원	1,155,000원	1,540,000원
3억 원 초과	41.8%	501,600원	1,254,000원	1,672,000원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4) 황진태 외 5인(2012),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5) 황진태 외 5인(2012),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6) 한계세율 = 근로소득한계세율 + 주민세율

2.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배경

- 개인의 근시안적인 소비계획으로 인한 미래의 재정지출 요인을 미리 차단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음.
 - 개인의 경우 현재의 소비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두거나 장기저축상품의 이자율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래소비에 대한 과도한 할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개인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 단기적으로는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연금저축 활성화를 통한 저축 확대로 미래생산의 증가가 기대될 수 있음.
 -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약 7,292억 원으로 추정됨.⁷⁾

나. 현황

-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가계 스스로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제도임.
 -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 축적을 위해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세금공제제도의 목적이 가계의 노후대비 자금축적을 위함이며 목돈마련이 아니므로 연금저축기간이 10년 이상(55세 이상은 5년 이상) 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됨.

7)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커질수록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 2010년까지 300만 원이던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부터 4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해당기간 사이에 예년보다 높은 세제적격 연금저축가입액의 증가가 일어났음.

〈표 3〉 개인연금 소득공제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인원	금액	인원증가율	금액증가율
2007	1,305,714	2,764,420	-	-
2008	1,518,064	3,236,059	16	17
2009	1,698,839	3,655,487	12	13
2010	1,891,086	4,177,145	11	14
2011	2,176,857	5,422,422	15	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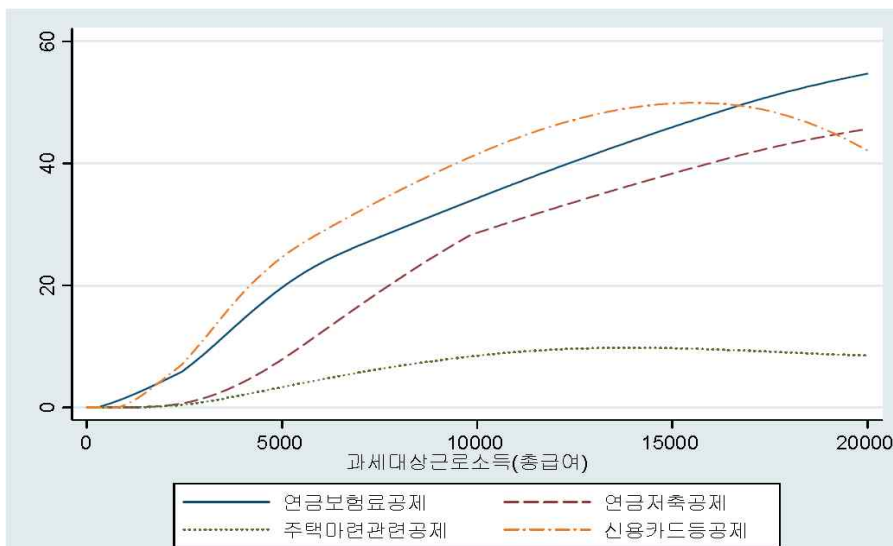
다. 문제점

■ 소득공제 혜택이 누진적 소득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액수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됨.

- 고소득층은 중·저소득층에 비해 가계당 개인연금에 납입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고 높은 세율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도 상대적으로 큼.
- 이에 반해 중·저 소득층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개인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적고 소득세율이 높지 않아 소득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노후준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없는 계층에 정부 재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역진성이 발생함.

〈그림 1〉 기타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수준별 절세금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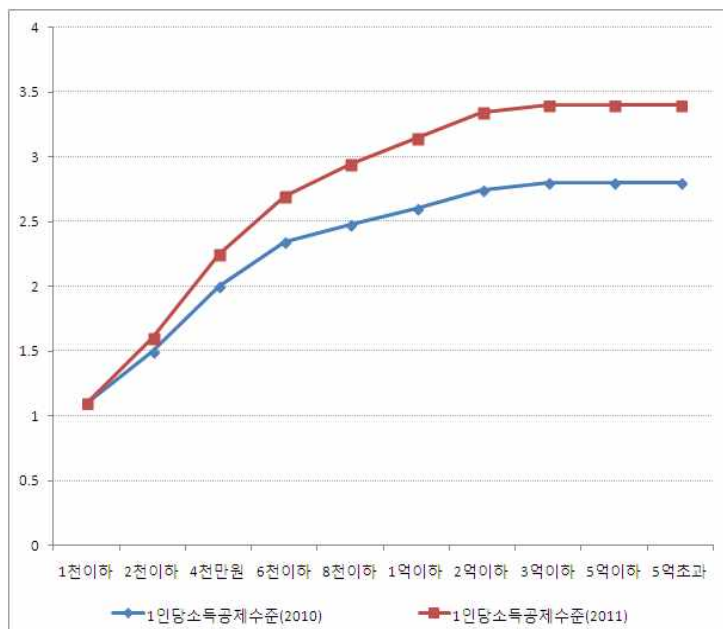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2009년 자료 이용).

■ 고소득층은 노후대비 보다는 절세의 목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행태를 보임.

- 〈표 3〉에서 보듯이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난 2011년 소득공제 신청인원은 타 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15%만 늘어난데 반해, 소득공제 신고액은 30% 늘어난 것을 통해 고소득층이 절세목적으로 개인연금가입액을 늘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그림 2〉에서 보듯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개인연금 불입액이 천천히 늘어남.
- 고소득층은 2010년에 300만 원 근방에서 수렴하던 개인연금 불입액이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난 2011년에는 400만 원 근방으로 수렴함.

〈그림 2〉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연금 소득공제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국회예산처(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윤성주(2013),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재인용.

■ 저축 증가 측면에서 새로운 저축 창출보다는 기존저축의 이전이 일어남.

- OECD 보고서⁸⁾에 의하면 세제혜택으로 인한 새로운 저축창출효과는 고소득층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중·저 소득층에서만 존재함.

3. 결론 및 제언



■ 현재 일률적인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노후대비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됨.
- 정작 노후대비에 도움이 필요한 중·저 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원을 받게 됨.

8) Pablo Antolin et al.(2004), "Long-term budgetary implications of tax-favoured retirement plan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93, OECD.

■ 현재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있는 개인연금 소득공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의 세제지원은 정부지원 없이도 노후준비가 가능한 고소득층보다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제공되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소득에 따라 100% 이하부터 100% 이상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면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소득층에게 노후대비의 추가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연 과세표준소득 8,800만 원 이상은 400만 원까지 80%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4,600만 원 이하는 1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시키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스스로 노후준비가 전혀 불가능한 빈곤층의 지원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독일의 리스터 연금⁹⁾처럼 노후준비가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kiri](#)

9) Kiri Weekly(2011. 12. 19)를 참조.